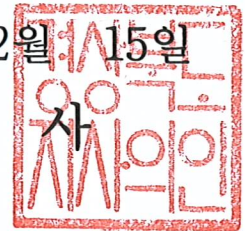


「경북형 초청 장학제도(K-GKS)」 수학대학 모집 공고

지역 주력 첨단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「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에 의거하여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(K-GKS)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

1. 추진근거

- 가. 「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 제7조
- 나.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2. 추진방향

- 가.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 및 초기 정착 비용 지원
- 나.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, 활동실적, 전문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,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24. 1 ~ 2024. 12

나. 사업대상 : 자연·공학 계열 대학원 4개소

다. 지원인원 : 40명(이공계 석·박사급 외국인 우수 인재)

- 1개 대학당 최대 10명 지원 가능

- 지원시 경북에서 3년간 정주(취업·상위 과정 학업 진학) 협약서 징구 의무

※ 신청 대학이 4개 미만이거나 심사 결과 상위 4개 대학 지원 인원의 총합이 40명 미만일 경우, 학교별 대상 인원 또는 대학 수 확대 가능

라. 지원내용 : 학비, 체류비 등 지원

구분	항공료	정착 지원금	생활비 (보험료포함)	한국어 연수비	등록금*	한국어 우수 장학금	연구비	학위 논문 인쇄비
내역	일반석 실비	20만원	석/박사: 110만원	전액 -도220만원 -대학초과분	전액 -도500만원 -대학초과분	10만원	(자연공학) 24만원	실비 (50-80만원)
시기	최초입국 (1회)	최초 입국 (1회)	매 월 초	연 2회	학기 초 (연2회)	매 월 초	학기 초 (연 2회)	1회
방법	도→대학→장학생			도→대학		도→대학→장학생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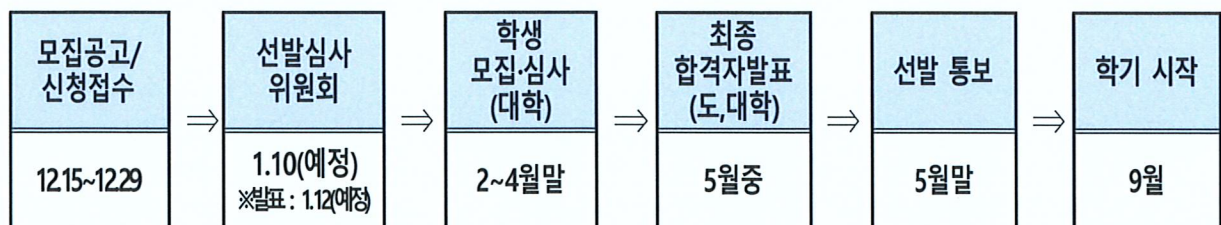
* '24년도 신규 선발 장학생은 한국어 연수(1년) 수료 의무화로 학위 과정 등록금은 '25년도부터 지급 예정

마. 지급기간 : 석사 3년, 박사 4년 ※ 한국어 연수 각각 1년 포함

바. 사 업 비 : 450백만원 ※ '24년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금 지급(8~12월)

- 학비·체류비, 유학생 유치·홍보비 : 112.5백만원×4개소 = 450백만원

사.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심사 기간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

가. 신청자격

- 최근 3년 이내 정부초청장학생(GKS) 수학 대학으로 선발된 대학
- 경북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) 중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가능한 이공계 전공 대학원(석사, 박사과정)을 둔 학교
 - 경북에 분교(캠퍼스)가 있는 경우에도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과 기숙사가 있으면 지원 가능
-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 가능한 대학
 - 등록금 지원금(500만원 한도) 초과액 자부담으로 지원
 - 장학기간* 내 학위 미취득시 초과기간 학비 면제**
 - * 장학기간 : 석사 2년, 박사 3년
 - ** 학비면제 필요기간 : (장학기간 종료 후) 석사 12개월, 박사 24개월 이내
 - 면제대상 : 장학기간 초과 국내 체류 재학 장학생
 - 면제조건 : 장학기간 누적 평점 평균(백분위 환산점수)이 80점 이상
 - 한국어 연수생 기숙사 제공 가능한 대학
 - 한국어 연수 및 학위과정까지 제공 가능한 국내 대학

※ 이공계특성화대학은 타 수학대학과 MOU체결을 하여 한국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

- 한국어연수 위탁 대학 : 경북에 소재한 대학 중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고 어학 연수 기간 동안 기숙사 제공이 가능한 대학

- 학기 시작 전 경북 글로벌 학당 입교 안내 및 필수 과정 지정(’24년 8월중)
- 경북에서 3년간 정주(취업 또는 상위 과정*으로의 학업 진학) 의무 사항 안내 및 협약서 징구

* 상위 과정 진학 시 K-GKS 장학생으로 지원 불가

나. 지원제외 대상

-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
-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대상

다.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

-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
-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- 지원받은 단체가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
- 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
-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
5.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/접수기간 : 2023. 12.15.(금) ~ 2023. 12. 29.(금)(15일간)

나. 접수방법 : 전자공문으로 신청 후 출력본 편철하여 제출(우편 또는 방문)

※ 단, 접수는 공휴일(토요일요일 포함)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(18:00까지) 도착분에 한함

- 접 수 처 : 경북도청 외국인공동체과(☎ 054-880-4551)

(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202호)

* 발표 자료(ppt 또는 pdf파일)는 발표(1.10 예정) 전날까지 별도 제출 / 이메일(gmjo129@korea.kr)

다. 제출서류(전자공문 붙임 첨부 및 우편 제출)

- 전자공문 : 각 1부 붙임 첨부
- 우편 및 방문 제출 : 출력본 편철하여 10부
 - 보조금 지원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, 세부사업계획서
 - 법인 또는 단체 등록증 등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관련 증빙자료

*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6. 지원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

가. 선정기준

구분	평가항목	평가방법	배점
선발·홍보 (20)	선발 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	정성	10
	홍보 계획의 실효성 및 이행 용이성	정성	10
학생 관리·지원 (30)	지원사업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	정성	10
	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(기숙사, 편의시설 등) 확보	정성	10
	학사 관리 및 적응 지원 계획	정성	10
역량 강화 (15)	학위 취득, 한국어 및 문화 활동 등 지원 계획	정성	15
졸업후 관리 계획 (30)	유관기관(지자체, 기업, 연구소 등)과의 협력관계 방안	정성	15
	졸업 후 관리 계획의 실효성	정성	15
기타 (5)	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여부 - 자부담 10%(1,250만원)이상 여부 판단 ■ 10%이상: 5점, 10%미만: 0점	정량	5
합 계			100

나. 선정방법 : 선정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(1.10 예정) → 선정 통보

※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6항

-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- 선정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
- 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 자료를 심사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

- 평균 70점 이상 법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재공모 추진
- 지방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1개 단체만 공모 참여시 재공모 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요청(※ 2017년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)

다. 심사 방법

- 위원회 서류 심사, 신청 대학 사업설명(PPT 또는 PDF파일)
※ 사업설명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
- 작성된 심사 자료를 심의위원이 직접 검토
- 심사평가표에 심사위원 개인별로 평가 점수 기입

라. 심사 요건

- ① 적격 여부 심사: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심사에서 제외
- ② 평가 항목별 심사
 - 수학대학 제출서류(사업계획서, 관련 증빙자료)를 중심으로 심사

마. 선정결과 : 개별 통보 ※ 미 선정된 법인·단체 등은 통보 생략

7. 사업비 교부 및 정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 등 회계관련 제반규정 적용
나.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규모, 사업시기,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
다. 사업비(자부담 포함) 집행 투명성, 효율성을 위해 지방보조 사업비 카드 사용 집행

라. 사업 정산은 종료 후 2개월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(자체부담 예산 포함)

-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나 실적보고서의 검증 필요

- 회계 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 보조사업자(지방자치단체 제외)는 외부 회계감사 필요
- 마. 필요시 성과평가를 실시(현지조사 등)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함.
- 바. 기타 사항은 「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함

8. 기타

- 가.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.
- 나.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,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.
- 다. 보조금의 지원대상, 대상사업, 제외대상,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도의 자체 판단에 의함.
- 라. 사업계획은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편성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
※ 운영비 관련 고려사항

- 가) 지방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
- 나) 지방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, ‘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’, 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’로 편성하여야 함
- 다)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능한 단체운영 기본경비

- ▷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▷ 상근직원 인건비·사무실임대료·사무용 집기구입·공과금·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
- ▷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,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(용역성 경비)
- ▷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,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
 -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

마.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음.

바.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람·공람, 수정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.

(단, 사실 확인 등 별도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 요구 가능)

9. 문의처

-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외국인정책팀(☎ 054-880-4551)